중국의 HACCP 법규 및 운영제도

HACCP laws and operating system in China's

배성주, 이철수*

Sung-Joo Bae , Cheol-Su Lee*

한국식품과학연구원

[1]Korea Advanced Food Rearch Institute, Uiwang 16001, Korea

이철수

Correspondence to

Cheol-Su Lee,
Associate professor, 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50, Botdeul-ro, Uiwang-si, Gyeonggi-do, 16001 Korea
Tel: +82-2-3470-8217
Fax: +82-2-585-0630
E-mail: 2haemin2@hanmail.net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법령

중국은 1995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었으나, 2000년대 발생한 다수의 식품 안전사고로 인해 중국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는 계기가 되었다[1]. 특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한 2001년 이후에도 중국산 농식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중국 국가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법률과 기준 및 식품안전 인증제도를 강화하여, 2009년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였다[1]. 식품안전법은 위생부(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해당)를 식품안전 업무의 주무 부처로 설정하여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 식품안전 표준 및 검사, 식품 생산 및 경영, 식품안전사고 관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1].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련 법률은 식품안전법을 기본법으로 생산품 품질법, 수출입 상품 검사법, 농산물 품질 안전법 등 약 20여 개가 존재한다[1]. 또한 행정 법규는 식량 유통 관리조례, 생돈 도축 관리조례, 농약 관리조례 등이 있다. 중국의 유일한 HACCP 관련 법령은 식품생산기업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HACCP) 관리체계 인증관리 규정으로 6장 22조로 구성되며[1], 기업의 HACCP 관리체계 수립과 운영요건, 인증 및 검증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은 중국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련 주요 법률, 행정법규, 규칙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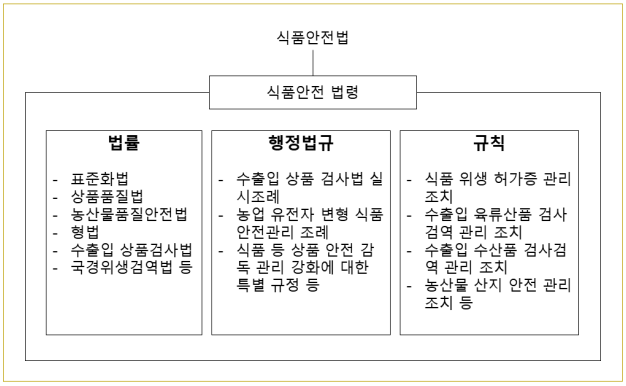

그림 1. 중국의 식품 안전 법령 체계

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담당 기관

중국은 식품안전법 제정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 행정 조직을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중앙정부 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으로 조직 체계를 확립하였다[1].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중국의 식품 안전 업무 관련 최상위 기구로서 식품 안전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며, 식품안전 업무를 배분하여 지도한다. 또한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주요 정책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1].

중앙정부의 식품안전 담당 행정기관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과 국가위생 · 계획생육위원회이다. CFDA는 식품 생산 및 가공 단계의 안전 관련 감독에 대한 업무와 식품 유통 단계의 안전 관련 감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식품의 생산 및 수출입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 국가위생 · 계획생육위원회는 식품 안전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식품 안전 관련 규칙을 제정한다[1]. 위생부는 식품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표준제정, 위험평가, 식품검사기관 인증 기준 및 검사방법 제정, 식품안전 사고의 처리를 담당한다[1].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은 식품 위생, 농업, 식품 · 약품 관리 · 감독, 농업 분야 등의 부서가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인민 정부와 협력하여 식품 안전 관련 관리 ·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관리를 받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CNCA)가 HACCP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HACCP 체계의 실시 및 출입국검사검역국의 검증업무를 관리 감독한다[1]. HACCP 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득한 후 국가인가기구의 자격인가를 득한 기관에서 담당한다[1]. 또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지방청인 출입국검사검역국이 각각 담당 지역 내 HACCP 관리체계 업무를 담당하여 HACCP 검증 증서를 발급한다[1].

3. HACCP 운영체제

가. 중국의 HACCP 도입 과정

중국의 HACCP 도입 과정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중국은 1990년 HACCP 개념이 포함된 '수출식품안전공정의 연구와 응용계획'을 발표하였다[1]. 1997년 미국 식품의약국이 주최한 수산물 HACCP 법규 및 제 1기 미국 HACCP 관리요원 교육훈련에 전문가 5인을 파견하여 중국에 HACCP을 도입하였다[1]. 1999년 중국검사검역

표 1. 중국의 HACCP 도입 과정

시기	추진 내용
1990.3	수산물 10종류 등 HACCP 이념이 포함된 '수출식품안전공정의 연구와 응용계획' 실시
1997.3	미국 FDA가 주최한 수산물 HACCP 법규 및 제1기 미국 HACCP 관리요원 교육훈련에 전문가 5인 파견
1997.10	180개 대 미국 수출수산물 생산기업에 대해 미국의 수산물 HACCP 법규가 규정한 요구사항 부합 여부 조사
1999.	중국검사 검역과학연구원 및 검사검역시스템 전문가들과 중국 최초의 HACCP 교육 훈련 교재인 '중국수출식품위생등록관리지침' 발간
2002.3	식품생산기업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HACCP) 관리 체계인증관리규정 제정
2003.8	위생부,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우수위생규범(GHP)과 HACCP체계 구축 촉구
2004.6	식품안전관리체계 요구 표준 및 식품안전관리체계심사지침 표준 제정

과학연구원 및 검사검역시스템 전문가들과 중국 최초의 HACCP 교육훈련 교재인 '중국수출식품위생등록관리지침'을 발간하였으며, 중국의 HACCP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1]. 이후 2002년 식품기업의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HACCP) 관리체계인증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1].

나. HACCP 적용 및 운영

중국은 수출 식품 중 HACCP 체계의 평가 · 심사가 필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반드시 HACCP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통조림, 수산물, 육류 및 육류제품, 급속냉동 채소, 과일 · 채소즙, 급속냉동 편의식품 등 6개 식품군의 모든 수출 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의무적용을 실시하고 있다[2]. 또한 국내와 달리 소규모 업체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HACCP 기준이 없다[3].

중국의 HACCP 심사는 인증 신청, 최초 인증 심사 1 · 2단계, 제품 안전성 검증, 감독, 심사로 진행되며 사후관리는 추적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4]. 인증 신청 단계는 국가 행정 관리 부문 혹은 관련 기관에 법인 자격을 취득한 자,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행정 허가 문건을 취득한 자, 생산 경영한 제품이 중국과 수입국 관련 법률, 법규, 표준 및 규범에 부합한 자, 1년 이내에 중국과 수입국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한 식품 안전 위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자 등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4]. 또한 인증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인증 신청서, 법적 지위 증명서 사본, 조직도와 직책 설명서, 공장 평면도 · 제품 설명서 · 공정 흐름도 · HACCP 계획표 · HACCP 항목 등에 관한 설명서, 생산, 가공 주요 장비 리스트 및 검사 장비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4].

최초 인증 심사 1단계는 신청자가 인증 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조사하는 것에 있다[4]. 피심사자의 HACCP 체계 범위, 과정, 장소, 필수 정보 및 관련 법률, 법규를 수집하여 HACCP 시스템과 현장 운영을 파악하고 피심사자가 2단계 심사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4]. 최초 인증 심사 2단계는 피심사자 HACCP 체계 실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에 있다[4]. 중국과 수입국 적용 법률, 법규 및 표준과의 부합성 및 수출 식품 생산기업의 안전 및 위생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HACCP 체계 실시 및 위생 관리 기준(SSOP)의 집행과 식품안전 위해 통제의 유효성, 제품 소급 가능성 체계 구축 및 부적합 제품 통제, 식품안전 검증 활동의 유효성 및 식품 안전 상황을 심사한다[4].

제품 안전성 검증은 제품 안전 등 현장 심사 혹은 관련 과정에서 인증 신청 제품을 샘플링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4]. 현장 심사자가 신청자의 검사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하거나 현장 심사자가 기타 검사 기관이 발급한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5]. 감독 심사는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특히, 제품의 실제 안전 상황과 기업 성실 및 신용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고 인증을 결정한다[5]. 또한 인증기관은 인증 획득 조직 및 시스템에 따라 제품의 위험을 포함하고, 감독 심사 시간 간격 혹은 횟수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인증기관이 감독 심사 횟수를 늘려야 한다[5]. 감독 심사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매회 감독 심사마다 가능한 한 HACCP 체계 인증 범위 내의 모든 제품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 심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5].

사후관리는 추적 조사로 진행되며 위험 분석을 기초로 통지 없이 현장 심사, 생산 현장 제품 샘플링 검사, 시장 샘플링 검사, 설문조사 등 방식을 통해 인증 획득 조직을 추적 조사한다[4]. 또한 불시 점검 시, 심사 48시간 전 인증 획득 조직에 심사 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5]. 인증 유효기간은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3년이며 인증서 일련번호, 조직 명칭 및 주소, 적용 범위, 인증서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5].

4. 요약

중국은 1995년 식품위생법을 제정하였고 2009년 식품

안전법을 제정하였다. 중국의 유일한 HACCP 법령은 식품생산기업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HACCP) 관리체계 인증관리규정으로 총 6장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 행정 조직은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중앙정부 행정기관,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으로 조직화 되어 있으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HACCP 업무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수출 식품 중 통조림, 수산물, 육류 및 육류제품, 급속냉동 채소, 과일 · 채소즙, 급속냉동 편의식품 등 6개 식품군을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소규모 업체에 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초 인증 심사는 관련 법률, 법규 준수 여부, HACCP 시스템, 샘플링 검사로 진행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3년이며, 불시 평가로 진행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추적 조사로 진행되며 통지 없이 현장 심사, 생산현장 제품 샘플링 검사, 시장 샘플링 검사, 설문조사 등 방식으로 조사한다.

참고 문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해외농업시리즈 2012, 1-9.
2. CHINA CERTIFICATION&INSPECTION GROUP KOREA CO, http://ccickorea.com/ko/%EC%A4%91%EA%B5%AD/%EC%9E%90%EC%9C%A8/haccp-2/ Retrieved 2021-11-04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생생해썹 제2호, https://magazine.haccp.or.kr/201709/sub6.html Retrieved 2021-11-04
4. CHINA CERTIFICATION&INSPECTION GROUP KOREA CO, http://ccickorea.com/ko/%EC%A4%91%EA%B5%AD/%EC%9E%90%EC%9C%A8/haccp-2/ Retrieved 2021-11-04
5. 글로벌식품법령 · 기준규격정보시스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체계 인증 실시 규칙(CNCA-N-008) 2011